



자국우선주의 시대의 사법 정의와 사법 성평등 ODA

- 2026년 제70차 UN여성지위위원회 참석 보고

1. 일반 정보

제7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2026년 3월 9일부터 2주 간 개최되었다. 금년도 우선 의제는 '모든 여성과 여아의 사법 접근성 보장 및 강화'였다. 금번 회기는 사법 접근성을 단순한 법률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여아의 안전, 권리, 존엄, 경제활동, 정치참여,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호, 분쟁 및 위기 상황에서의 생존과 회복을 포괄하는 구조적 과제로 다루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고령 여성 관련 장관급 원탁회의와 여성·여아 대상 폭력 관련 고위급 회기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사법 접근성 논의가 생애주기 전반과 복합 위기 대응 차원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회의 전반에서 확인된 또 하나의 특징은, 사법 접근성에 관한 국제적 합의가 원칙적으로는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으나, 실제 이행 수준에서는 국가 간 편차와 정치적 긴장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합의결론은 미국의 수정안 제기와 표결 절차를 거쳐 채택되었으며, 이는 성평등 관련 국제규범의 유지와 확장 자체가 여전히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핵심 메시지

- 2.1. 여성의 사법접근성은 '권리보장의 최종 단계'가 아니라 '성평등 실현의 출발' 조건으로 재정의
- 2.2. 디지털 기술과 AI는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는 수단이자 새로운 위험의 원천
- 2.3. 분쟁·취약국과 인도적 위기 맥락에서 여성의 사법 접근성은 평화구축과 회복의 핵심 기준

3. 주요 논의 내용

가. 일반 토의: 사법 접근성 의제를 구조적 성평등 의제로 확장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부가 참여하는 일반회의에서는 사법 접근성 논의를 협소한 '법 집행' 차원이 아니라, 제도적 평등, 경제적 자립, 폭력 예방, 디지털 안전, 분쟁 대응, 돌봄 체계까지 포괄하는 구조적 성평등 의제로 확장한 점이 가장 두드러졌다. 개회사와 주요 기초발언들은 공통적으로 여성이 여전히 남성의 2/3 수준의 법적 권리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사법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법적 권리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으로 무력화된다고 진단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증언이 신뢰받는가', '피해가 기록되고 책임이 추궁되는가', '비용과 거리, 돌봄 부담 때문에 절차에서 배제되지 않는가'가 실질적 정의의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일반토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법 접근성 논의의 중심에 놓는다. 다수의 발언은 폭력 문제가 개별 사건의 처벌 여부를 넘어, 사법 기관의 젠더 편향, 사회규범, 피해자 낙인, 기관 간 연계 미흡, 취약계층 여성의 정보·언어 접근성 부족, 농촌 및 분쟁 지역의 지리적 제약 등과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고 보았다. 이 때문에 원스톱 센터, 전문 법원, 무료 법률지원, 전자 모니터링, 위험평가, 피해자 보호명령, 전담 핫라인과 디지털 신고체계 등 여러 국가의 제도 사례가 소개되었다. 이 회의의 공동된 평가는 '제도 확충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이 생존자의 실제 삶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데 있었다.

또한 금번 회기에서는 고령 여성 관련 논의가 별도로 부각되었다. 이 논의는 사법 접근성이 단지 젊은 여성이나 폭력 피해자에 한정된 가제가 아니며, 생애주기 전반에서 누적되는 불평등의 결과를 교정하는 문제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고령 여성은 무급

돌봄의 장기 누적, 불완전한 노동 이력, 낮은 연금 접근성, 디지털 소외, 사회적 고립, 고령차별(ageism) 등으로 인해 노년기에도 권리 접근에 제약을 받는다는 인식 공유되었다. 따라서 연금과 사회보호, 평생학습, 돌봄의 사회화, 디지털 포용, 고령 여성의 직접 보장이 사법 접근성의 확장된 요소로 제시되었다.

나. 부대 행사: 여성인권옹호자 보호, 디지털 전환, 전쟁과 회복, 데이터와 실행체계

국제기구 등이 주축이 된 부대행사(side events)에서는 전체회의의 거시 담론을 보다 구체적인 실행 문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집중되었다. 첫째, 여성인권옹호자와 여성 평화구축자 관련 세션에서는 이들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평화, 정의, 책임 추궁, 민주주의의 핵심 행위자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살해위협, 체포, 디지털 공격, 낙인, 자금 차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긴급 대피 중심의 단기 보호를 넘어 장기 재정지원, 법률보호, 심리사회 지원, 디지털 안전, 지역 여성 단체 직접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둘째, AI와 여성·여아의 사법접근권 세션, 그리고 디지털·AI 기술을 통한 여성 보호와 역량강화 세션에서는, 기술이 법률정보 제공, 사건관리, 신고 접근성 향상 등에서 실질적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사회에 내재된 편견을 자동화하고 디지털 폭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중심을 이루었다. 특히 딥페이크, 온라인 괴롭힘, 디지털 성범죄, 채용 차별 탐지, 고위험군 초기 식별, 디지털 신고체계 등의 사례가 논의되었다. 한국과 EU사례를 포함하여 기술 규제와 플랫폼 책임, 고위험 AI 통제, 여성 참여형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향후 성평등 의제가 더 이상 사회정책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디지털 정책과 AI 거버넌스의 핵심 설계 원리로 자리 잡아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부대행사들은 회복과 회복력의 개념을 재정의 하였다. 복구는 단순한 인프라 재건이 아니라 정의, 배상, 제도개혁, 심리사회 지원, 돌봄, 여성의 노동 복귀와 지역 사회 리더십을 포함하는 젠더변혁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성의 참여는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회복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이라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동시에 현장 여성활동가들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경직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여성단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유연한 자금 지원 확대를 요구한다.

넷째, 젠더 데이터 및 여성대상폭력 대응 실행 수단을 다룬 세션들은 성평등 이행의 관건이 선언이 아니라 데이터, 예산, 지방조정, 다기관 협력, 시민사회 참여가 결합된 실행체계 구축에 있음을 강조했다. ‘여성이 데이터에서 보이지 않으면 정책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시간사용조사, 여성폭력

데이터, 행정데이터 연계, 디지털 추적 시스템, 성인지 예산, 지역사회와 전통적 지역사회 지도자·남성과 소년의 참여가 모두 실질적 집행의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4. KOICA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첫째, KOICA는 여성권한강화 사업을 단순한 교육훈련 중심에서 벗어나, 생존자 중심 정의와 젠더대응적 사법·보호 시스템 구축을 포함하는 제도개혁 의제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분쟁·취약국과 폭력 고위험 지역에서는 원스톱 서비스, 무료 법률지원, 사례관리, 보호명령, 경찰·사법·보건·사회복지 간 연계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폭력 대응과 법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전환과 AI 협력 사업에는 성평등 관점을 사후 보완적으로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초기 설계 원리로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신고체계, 온라인 법률정보, AI 기반 사건관리, 디지털 ID 및 행정 시스템 지원 사업을 추천할 경우, 알고리즘 편향 점검, 피해자 보호, 플랫폼 책임, 개인정보와 안전설계, 여성의 디지털 역량강화 요소를 함께 포함해야 한다. 이는 향후 KOICA의 디지털 ODA와 젠더 ODA를 연결하는 중요한 접점이 될 수 있다.

셋째, 분쟁·취약 및 인도적 위기 맥락에서는 여성단체와 여성 인권옹호자, 지역 여성 리더십에 대한 직접적이고 유연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의는 전반적으로 여성단체가 단순한 집행 파트너가 아니라 책임추궁, 증거 기록, 피해자 지원, 지역사회 회복, 평화구축을 떠받치는 핵심 공공 인프라로 기능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KOICA도 대형 국제기구를 경유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현장 여성단체와 지역 네트워크가 실제로 접근 가능한 자금 구조와 간소화된 행정 절차를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젠더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젠더 데이터와 성인지 예산, 생애주기 관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여성폭력 데이터, 시간사용조사, 행정데이터 통합, 지역별·집단별 분해통계, 성인지 예산은 모두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이다. 아울러 고령 여성, 농촌 여성, 장애 여성, 원주민 여성, 난민·이주 여성 등 교차적 취약집단을 별도 표적으로 반영하여, 사법 접근성과 사회보호, 디지털 포용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설계가 요구된다.

5. 결론

국제사회에서의 선언과 합의가 법제화로 이어지는 것은 젠더 의제가 정책적으로 실현되고 효과를 미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교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실은 여전히 국가별 상이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고, 결국 기대만큼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이번 여성지위위원회는 국제사회의 사법정의를 위한 젠더평등 실현을 향한 열망과 관심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 한계 역시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ODA 환경은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마지막 모습은 불확실하고, 그 과정은 매우 예측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UN 등 국제기구 중심의 ODA 담론장은 올해 중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젠더ODA 역시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운명을 시험받고 있다. 그리고 여성들이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멀어진다. .끝.

디지털·보건·사회개발팀
(chsnam@koica.go.kr)